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368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6 선고 2023나3683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11224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재상, 이승현

변론 종결2024. 8. 20.

판결 선고2024. 11. 26.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112240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C과 피고 사이에 제1심 판결 첨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4. 6.자 매매계약은 10,305,7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305,7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채권인의"를 "채권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별지"를 "제1심 판결 첨부 별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5행의 "G상호저축은행"을 "K저축은행"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C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을 "C이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거상라는"을 "것이라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 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을 제1 내지 9호증"을 "을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6행의 "일부 증언" 다음에 ", 제1심 법원의 L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점"을 "이 사건 매매대금 21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한 점(피고가 위 40,000,000원의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의 "이후 피고가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 다음에 ", L은행이 2018. 9. 10.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조사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기선

판사이상윤

판사노호성